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원·수사기관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비용 일괄 규정〉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853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입법취지와 필요성	4
2. 주요 내용과 체계	7
3. 주요 사항별 검토	9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9
나.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안 제2조)	11
다. 일당, 여비 및 숙박료 지급 원칙(안 제3조~제7조)	15
라. 법원(안 제9조~제14조)	17
마.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안 제15조~제20조)	22
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안 제21조~제25조)	28
사. 부칙	3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호 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2.
3. 회 부 일 : 2025.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절차에서 법원의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이나 현행법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협조한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의 내용이 없어 일반 국민이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내용을 수사기관마다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과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과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이 여비, 일당과 숙박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법원 및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서 증인·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원에 출석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안 제9조).

다.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기까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12조).

라. 검사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5조).

마. 검사가 지정한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의 기준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이 정함(안 제17조).

바.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등의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8조).

사.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참고인이 진술을 종료한 날,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감정서를 제출한 날 또는 문서의 통역·번역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안 제19조).

아. 사법경찰관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1조).

자.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등의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참고인이 진술을 종료한 때와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감정서를 제출한 때 또는 문서의 통역·번역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24조).

III. 검토의견

1. 입법취지와 필요성

- 현행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 한다)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및 국선변호인이 법원의 형사 재판 절차에 협력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의 기준 및 지급 절차를 규정함으로써¹⁾, 법원의 형사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임.

한편, 「형사소송법」 제16장(제186조부터 제194조의5까지)은 ‘소송 비용’이라는 표제 아래 유죄 판결 시 피고인, 무죄 판결 시 고소인·고발인 등이 부담하는 소송비용²⁾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게 국가가 반환·부담하여야 하는 비용³⁾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법」은 이러한 소송비용의 범위·산정기준·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 1)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3)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3. 「형법」 제9조및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을 사유로 발생한 경우

○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21조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고인 등이 수사절차에 협력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비용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실무적으로는 각 기관별로 훈령·예규 등에 따라 참고인 등 수사절차 협력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용산정 기준과 지급 범위가 기관별로 상이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일반 국민이 비용 지급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기관	행정규칙	비용 산정 규정 예시(여비·일당·숙박료·식비)
검찰청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법무부훈령)	제3조(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3조(운임, 일당, 숙박비 및 식비)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② 운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제2호를 준용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

- 4)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 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찰청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경찰청훈령)	제4조(여비·숙박료·식비) 참고인등의 여비, 숙박료, 식비는 소요비용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제1호의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절차 모든 단계에서의 비용 지급 근거를 법률에 통합·일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비용 지급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식이 제고되고, 기관 간 통일성이 확보되며, 적극적인 형사절차 협조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형사소송비용법」의 입법 경과를 보면, 1954년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한 차례의 전부개정 및 두 차례의 일부개정을 하였음.

시행 시기	법률 제명	제·개정 방식	제·개정 내용
1954. 9. 1.	형사소송비용법	제정	형사소송법의 제정·시행에 맞춰 형사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1962. 7. 31.	형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일당·숙박료·여비 등을 현재의 물가 수준에 맞도록 인상함.
1999. 12. 31.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급기준 및 청구기한을 명확히 규정함.
2012. 2. 10.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한글 화하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함.

2. 주요 내용과 체계

○ 개정안은 총 4장, 2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총칙)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법률의 목적, 형사소송비용의 범위, 비용 지급의 기본 원칙 등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는 모든 형사절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비용의 지급 주체가 되는 기관별로 장을 구분하여 비용 지급 대상 및 범위, 산정 기준, 비용 청구 절차와 지급 시기, 지급 제한 사유, 하위 법령 위임 조항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2장은 법원, 제3장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제4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개정안의 구성 체계>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제3조(일당) 제4조(여비) 제5조(숙박료) 제6조(여비 등의 계산) 제7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제8조(자료의 제출)

제2장 법원	제9조(법원에 출석한 증인 등의 소송비용) 제10조(법원의 감정료 등) 제11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제12조(법원에 대한 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13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제14조(위임규정)
제3장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제15조(검사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 등의 소송비용) 제16조(검사가 위촉한 감정인에 대한 감정료 등) 제17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당) 제18조(참고인 등과 전문수사자문위원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제한) 제19조(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20조(위임규정)
제4장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제21조(사법경찰관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 등의 소송비용) 제22조(사법경찰관이 위촉한 감정인에 대한 감정료 등) 제23조(참고인 등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제한) 제24조(소송비용의 지급시기) 제25조(위임규정)

한편, 제2장부터 제4장까지 기관별로 규정된 조문들은 비용 지급 대상, 용어 사용,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에서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여, 자칫 동일한 제도임에도 적용기준이 달라지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 ① 법률 체계 전반의 통일성 확보, ② 동일한 제도에 대하여 중복·분산된 규정의 정비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문 체계와 자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주요 사항별 검토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제명)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 및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서 증인·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법령의 제명은 알기 쉽고 간결하며 주요 규정 내용을 잘 대표할 필요가 있으므로,⁵⁾ 법원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절차 단계의 비용까지 포괄하여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혁적으로 보면, 동 법률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강조하는 개정안의 제명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은 법원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검찰청·공수처·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제명을 ‘형사절차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절차 협력비용 등에 관한 법률’

5)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 이론과 실제』, 2024, p.75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및 개정안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u>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u> 또는 <u>국선변호인에게</u>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법원 및 수사기관의</u> ----- -- <u>증인·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u> 또는 <u>국선변호인·전문수사자문위원회에</u> ----- -----.

- 한편,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등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② 증인·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국선변호인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형사절차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⁶⁾의 규율 범위가 법원의 형사절차에 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개정안은 제1조(목적)에서부터 수사기관의 비용 지급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법원의 형사절차에 한정되던 기존 범위를 수사부터 공판까지 형사절차 전체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6)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안 제2조)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 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 안 제2조는 「형사소송법」 제16장(제186조~제194조의5)에 규정된 소송비용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조항으로서, 특히 같은 법 제186조 제1항7)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2조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 현행 대비 개정안의 소송비용 범위 >

구 분	현 행	개정안	
	법원의 형사절차	법원의 형사절차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일당·여비·숙박료	증인·감정인· 통역인·번역인	증인·감정인· 통역인·번역인	참고인·감정인· 통역인·번역인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감정인·통역인· 번역인	감정인·통역인· 번역인	감정인·통역인· 번역인
보수·일당·여비·숙박료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전문수사자문위원

7)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법은 소송비용의 범위를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검찰청·공수처·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포괄함으로써 소송비용의 범위가 전체 형사절차로 확대되는 구조이므로, 유죄 판결 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와 규모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수사 개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비용 부담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참고인·전문수사자문위원 등은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소환·위촉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까지 피고인에게 일률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수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 및 비례 원칙에 비추어 과도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이 과중해질 경우 피고인의 증거신청, 변호인 조력 등 방어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어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수사기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참고인·전문수사자문위원 등 비용까지 소송비용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그 필요성·정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⁸⁾.

○ 또한 국선변호인과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펴 보면, 공판절차에서 범

8)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20헌바64 결정(2021.2.25.)에서, 소송비용의 범위 설정은 형사절차의 구조, 국가 재정,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형성할 수 있는 정책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현행법상 소송비용이 공판절차에서의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일당여비 등의 비용 및 국선변호인의 비용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여비 등은 현행법에 소송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⁹⁾,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선정하는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법률이 아닌 법무부 훈령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¹⁰⁾에 근거하여 국가가 부담해 왔고, 개정안에는 소송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절차 전반의 비용 지급 체계를 법률로 통합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사단계의 국선변호사 비용까지 피고인 부담의 소송비용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1조가 ①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② 형사절차에 협력한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기준을 정하는 두 가지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10)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피해자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27조제6항 단서(「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하면서, 수사절차 비용은 별도의 장 또는 조문에서 규정하는 입법 방식도 가능하므로, 수사절차 비용을 일률적으로 소송비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안 제2조 중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일당, 여비 및 숙박료”,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등 문구는 개정안 전반에서 동일하게 반복하여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입법기술 측면에서 약칭 도입이나 정의 규정을 활용하여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반복되는 용어	약칭 예시	관련 조문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감정인등	안 제1조,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감정료등	안 제2조, 제10조, 제16조, 제22조
일당, 여비 및 숙박료	일당등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21조

다. 일당, 여비 및 숙박료 지급 원칙(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3조(일당)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 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한다.

제5조(숙박료)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夜]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여비 등의 계산) 일당, 여비(항공운임은 제외한다) 및 숙박료를 계산할 때 여행 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와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7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 및 수사기관이 정한 기일·장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받은 경우에만 지급한다.

○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증인·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및 국선변호인 등 형사절차 협력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일당·여비·숙박료)의 산정 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제2장(법원), 제3장(검찰청·공수처), 제4장(경찰청·해양경찰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여행 일수 계산은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비용의 불필요한 증가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기준은 그 판단이 주관적일수

있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경우 여행 일수를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위하여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개 정 안
제4조(여비의 계산) <u>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u>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u>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u>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여비 등의 계산) 일당, 여비(항공운임은 제외한다) 및 숙박료를 계산할 때 <u>여행 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u>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와 방법으로 계산한다.

또한 안 제6조는 여비 구성요소 중 ‘항공운임’을 제외하고 있는데, 안 제4조(여비)에도 운임의 한 종류로 항공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의 경우도 항공운임만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법원(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9조(법원에 출석한 증인 등의 소송비용) ① 법원에 출석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② 운임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국내와 국외(공해를 포함한다) 사이를 여행하는 경우에 그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내를 여행하는 경우의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10조(법원의 감정료 등) 법원이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 또는 처분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③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12조(법원에 대한 소송비용의 청구기한)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재판이 있기까지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제13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①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가 증인신문(證人訊問)이나 그 밖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정할 사항은 해당 법관이 정한다. 다만, 해당 법관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외의 법관이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본

문을 준용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법원의 형사절차에 협력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및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비용(일당, 여비, 숙박료 및 감정료 등)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형사소송비용법」과 대체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정합성, 용어 정확성, 타 기관 규정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 제목은 “법원에 출석한 증인 등의 소송비용”으로 되어 있으나, 조문 내용은 실제로 일당·여비·숙박료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안 제10조·제11조의 경우 “감정료”와 같이 제목에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 제9조 제목을 “법원에 출석한 증인 등의 일당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같은 이유로, 안 제15조¹¹⁾ 및 제21조¹²⁾에 포함된 “소송비용” 용어도 “일당 등”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안 제15조(검사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 등의 소송비용) 검사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안 제21조(사법경찰관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 등의 소송비용) 사법경찰관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9조제3항은 국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증인·감정인 등의 여비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단계의 참고인·감정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부분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칙(제1장)에 규정하거나, 제3장·제4장에도 반영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는 감정료·통역료·번역료를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현실적으로 감정의 난이도·전문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금액 기준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존재함.

또한, 제3장·제4장에서는 수사절차의 감정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체계상 상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감정료 등을 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2조는 증인 등이 법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재판이 있기까지(제1호),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제2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안 제12조제2호는 「형사소송법」 제193조¹³⁾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필수적으로 열릴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달리 실무적으로는 동 제도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¹⁴⁾, 제2호가 말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가 정확히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수사절차에서 비용 청구기한을 규정한 안 제19조¹⁵⁾를 참고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3장(검찰청·공수처) 및 제4장(경찰청·해양경찰청)은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경우 등 비용 지급 제한의 사유를 규정¹⁶⁾하고 있는 반면, 제2장(법원)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13) 「형사소송법」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4) 대법원은 소송비용부담 재판 건수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15) **안 제19조(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소송비용의 청구기한)**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날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감정서를 제출한 날 또는 문서의 통역·번역을 완료한 날

16) **안 제18조(참고인 등과 전문수사자문위원회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전문수사자문위원회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한 경우

3.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수사자문위원회가 허위의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5. 전문수사자문위원회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안 제23조(참고인 등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한 경우

3.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법원의 형사절차에서도 증인·감정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할 우려가 있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나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심판 절차에서 증인·감정인 등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사례¹⁷⁾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 지급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 ④ 중앙심판원장 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일당,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거짓의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마.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15조(검사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 등의 소송비용) 검사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검사가 위촉한 감정인에 대한 감정료 등) 검사가 위촉한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한다.

제17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당) 검사가 지정한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의 기준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이 정한다.

제18조(참고인 등과 전문수사자문위원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전문수사자문위원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한 경우
3.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수사자문위원이 허위의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5.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19조(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소송비용의 청구기한)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날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감정서를 제출한 날 또는 문서의 통역·번역을 완료한 날

제20조(위임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검찰청 및 공수처의 수사절차에서 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일당, 여비, 숙박료 및 감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수사단계 비용에 대해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18조제1호는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진술’에 대한 비용 지급 제한은 수사절차에 대한 성실한 협력을 유도하고, 허위진술로 인한 수사 왜곡과 불필요한 국가 비용 지출을 방지하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법적으로 진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임의 협조자에 해당하고, 특히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 제12조제2항¹⁸⁾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18) 「헌법」 제12조제2항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소지가 있으므로¹⁹⁾,

헌법상 정당하게 행사된 ‘진술거부’까지 비용 지급 제한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및 참고인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⁰⁾.

참고로, 비용 지급 제한과 관련한 훈령 등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진술을 거부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²¹⁾, 진술 거부를 비용 지급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²²⁾.

더불어, 동일 취지의 규정인 안 제23조제1호²³⁾의 규정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 조항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헌법상

19)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뿐 아니라 장차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게도 보장된다고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1990.8.27. 89헌가118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도 참고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피조사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음(국가인권위원회, 2016.11.25. 16진정0411500).

20) 이를 검토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비용지급이 제한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형사소송법」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21)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법무부훈령)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6조(부지급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특허청훈령) 제5조(비용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참고인등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2)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경찰청훈령)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6조(지급 제외사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회에서서의증인등비용지급」(국회규칙)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 안 제23조(참고인 등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진술거부권 보장을 위해 ‘진술을 거부한 경우’를 비용 지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안 제18조제3호는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감정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관이 원하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 지급을 제한한다면, 이는 감정의 독립성, 중립성 및 절차 협조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는 표현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자의적 법 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규칙 등도 비용 지급 제한은 “기능이 미숙하여²⁴⁾”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²⁵⁾”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더불어, 동일 취지의 규정인 안 제23조제3호²⁶⁾의 규정도 검토가

24)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법무부훈령)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25)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경찰청훈령)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의사 또는 감정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검안이나 감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6조(지급 제외사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위촉받은 임무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6) 안 제23조(참고인 등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및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 조항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비용 지급 제한 사유를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5조는 검사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 등도 안 제2조제3호²⁷⁾에서 소송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전문수사자문위원에 대한 비용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7조는 검사가 지정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의 기준 및 금액을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 또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²⁸⁾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²⁹⁾, 전문수사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주체에 공수처장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9조는 검찰청 및 공수처에 참고인·감정인·통역인 및 번역

해양경찰청은 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안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번호인 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2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 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공수처훈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의 비용 청구기한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체계·자구 검토 사항으로 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8조제3호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한 목적”을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위촉한 목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21조(사법경찰관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 등의 소송비용) 사법경찰관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법경찰관이 위촉한 감정인에 대한 감정료 등) 사법경찰관이 위촉한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3조(참고인 등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한 경우
3.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소송비용의 지급시기)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지체 없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감정서를 제출한 때 또는 문서의 통역·번역을 완료한 때

제25조(위임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수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수사절차에 협력한 참고인·감정인·번역인 및 통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 안 제24조에서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참고인이 진술을 종료하거나 감정인 등이 요청한 업무를 완료한 때 “지체 없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규정들에 따르면 비용 지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출 비용산정, 비용 지급 제한 사유 확인 등 후속 절차를 예정하고 있어 “지체 없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검찰청 및 공수처의 경우 안 제19조에서 “청구기한”만을 규정하고 있고³⁰⁾, 지급시점을 “지체 없이”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동일한 수사절차임에도 지급 방식이 달라 법체계상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실무 집행 가능성 및 법체계 통일성을 고려하여 안 제24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동 조항과 관련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검찰청 및 공수처 규정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참고인이 진술을 종료하거나 감정인 등이 업무를 완료한 때부터 2개월의 여유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0) 안 제19조(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소송비용의 청구기한)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날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감정서를 제출한 날 또는 문서의 통역·번역을 완료한 날

개 정 안	경찰청 수정의견	해양경찰청 수정의견
제24조(소송비용의 <u>지급시기</u>)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때</u> 에 <u>지체 없이</u>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u>때</u>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감정서를 제출한 <u>때</u> 또는 문서의 통역·번역을 완료한 <u>때</u>	제24조(소송비용의 <u>지급시기</u>)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u>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u>날</u>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감정서를 제출한 <u>날</u> 또는 문서의 통역·번역을 완료한 <u>날</u>	제24조(소송비용의 <u>청구기한</u>)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u>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u>때</u>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감정서를 제출한 <u>때</u> 또는 문서의 통역·번역을 완료한 <u>때</u>

- 안 제23조제1호·제3호와 관련하여 제3장(검찰청·공수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³¹⁾,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한 경우”를 비용 지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 및 감정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 제한 사유를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체계·자구 검토 사항으로 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3조제3호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한 목적”을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위촉한 목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1) 동 검토보고서 p. 23 ~ 26

바.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은 부칙에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으나, 부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은 대법원·검찰청·공수처·경찰청·해양경찰청 각 기관의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흩어져 있던 비용 지급 근거를 통합하여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이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비용의 효력 인정 문제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 및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출석·감정·국선변호 등 비용 지급 사유에 대해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적용례’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17조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수당의 기준 및 금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제5항³²⁾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에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제5항 중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제3조(증인 등의 일당)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4조(증인 등의 여비)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夜]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6조(국외여비 등의 금액)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국내와 국외(공해를 포함한다) 사이를 여행하는 경우에 그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7조(감정료 등)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9조(여비 등의 계산) 일당, 여비(항공운임은 제외한다) 및 숙박료를 계산할 때 여행 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와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10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장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 또는 처분에 참여한 경

우에만 지급한다.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재판이 있기까지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제12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①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가 증인신문(證人訊問)이나 그 밖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정할 사항은 해당 법관이 정한다. 다만, 해당 법관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외의 법관이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1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비용명세서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065